

의안
번호

479

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06. 10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479호
- 다. 제출일자 : 2025. 05. 20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05. 21.

2. 제안이유

- 2024년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로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기금설치 개요

- 1) 설치근거 :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
- 2) 설치목적 :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으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
- 3) 설치연도 : 2023. 7. 13.
- 4) 기금의 용도
 -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 - 지역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 -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 - 그 밖에 주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나.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개요

- 1) 운용계획 변경 사유 :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가 (증 49,608천원)
 - 2024년 목표 기부모금액을 초과하여, 기금 수익금이 당초 수익금 20,317천원보다 49,608천원 증액됨
 - 2025년 고향사랑기금 규모

예치금회수액 ①	2025년도 기금수입 예상액 ②	2025년 최종 기금예산액 (①+②=③)
119,837천원	62,686천원	182,523천원

2)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○ 자금수지 총괄

(단위 : 천원)

2025년 수입계획				2025년 지출계획			
항 목	당초 수입액	변경 수입액	증 감	항 목	당초 지출액	변경 지출액	증 감
합 계	132,915	182,523	49,608	합 계	132,915	182,523	49,608
전입금	-	-	-	비용자성사업비	1,600	1,600	-
보조금	-	-	-	융자성사업비	-	-	-
차입금	-	-	-	인력운영비	-	-	-
융자금회수 (이자 포함)	-	-	-	기본경비	-	-	-
예탁금원금회수	-	-	-	예탁금	-	-	-
예치금회수	70,229	119,837	49,608	예치금	131,315	180,923	49,608
예수금	-	-	-	차입금원리 금상환	-	-	-
이자수입	2,686	2,686	-	예수금원리 금상환	-	-	-
기타수입	60,000	60,000	-	기타지출	-	-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및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- 2)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
- 3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등에 관한 조례」 제13조 (고향사랑기금의 설치)
- 4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(고향사랑기금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수입·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- 고향사랑기금¹⁾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제정 : 2021. 10. 19. 시행: 2023. 1. 1.의 시행²⁾의 시행에 따라 '고향사랑기부제'가 도입되면서 모금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과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자 설치된 기금임.

□ 주요내용

- 본 변경안은 '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, 기금 수익금이 당초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하여 '2025회계연도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 수입을 당초 보다 4,960만원 증액된 1억 1,983만원으로 수입계획에 변경하고,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 중 예치금에 4,960만원을 추가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.

-
- 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」 제30조(고향사랑기금) ①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(이하 이 조에서 "고향사랑 기부금법"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고향사랑기금(이하 이 조에서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- ②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
 2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 3.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-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고,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 2.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 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 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- ④ 구청장은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액 중 일부를 홍보비, 인쇄비,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23.7.13.]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예치금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72.5%, 4,960만원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1조제2항³⁾단서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,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.
- 본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,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.

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1.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
2.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
3.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